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53호 2010. 4. 9.(금)**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3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2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9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1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34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7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 ----- 48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재정비축진 해제지역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5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20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5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33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6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36호 방법CCTV모니터요원채용공고 ----- 6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를」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와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육성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기타,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서구의회 의장은 장학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15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9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청라동 주민센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보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길 4 (삼곡동 246-1번지)	인천광역시서구 일원
인천광역시서구 검단보건지소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4블럭 4롯데	인천광역시서구 검단지역

## [별표 4]

##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길 508 (검암동 606-8번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중 별표 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 회 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1길 14 (연희동 712번지)	
청 라 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6-6	
가정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정자1로 5 (가정동 483-1번지)	
가정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동우약수길 21 (가정동 290-67번지)	
가정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1로 103 (가정동 565-4번지)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사길 5 (신현동 294번지)	
석남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명가골2길 29 (석남동 465-3번지)	
석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시장길 30 (석남동 573번지)	
석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산길 133 (석남동 488-23번지)	
가좌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감중절2길 162 (가좌동 145-43번지)	
가좌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윗마을길 41 (가좌동 30-105번지)	
가좌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희망1길 6 (가좌동 212-13번지)	
가좌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엄나무길 18 (가좌동 335-2번지)	
검단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번지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3-13번지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3-1	
검단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하지구 5블럭 2롯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78”을 “78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0”을 “765”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78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97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8	21	2	6	1	18
6급 이하 계	643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8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문화관광체육과란의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영업의 신고·등록
  - 나. 신고·등록 사항 변경
  - 다. 신고·등록증 재교부
  - 라. 폐업 및 직권말소
  -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2.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영업의 신고·등록
  - 나. 신고·등록 사항의 변경
  - 다. 신고·등록증의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허가

나. 신고·등록·허가 사항의 변경

다. 신고·등록·허가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허가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4.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나. 공연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폐쇄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5.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별표 3 환경보전과 제1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

별표 3 환경보전과 제2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와 관련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2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희동란 다음에 청라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 라 동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6-6번지
-------	----------------------

별표의 검단3동란 중 “원당지구 75블럭 3롯데”를 “853-1번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청라동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3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서구 동장수 계 “17”을 “18”로 하고, 행정운영동 검암경서동의 관할구역란 중 “경서동”을 “경서동(행정운영동이 청라동에 속하지 않는 경서동 구역)”으로 하고, 행정운영동 연희동의 관할구역란 중 “연희동”을 “연희동(행정운영동이 청라동에 속하지 않는 연희동 구역)”으로 하며, 행정운영동 신현원창동의 관할구역란 중 “원창동”을 “원창동(행정운영동이 청라동에 속하지 않는 원창동 구역)”으로 한다.

별표의 행정운영동 중 연희동란 다음에 청라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1	청 라 동	경서동 4-5, 488, 488-1~35, 489, 490, 491, 492, 492-1~6, 493, 494-1~30 495, 496, 496-1~16, 497, 498, 498-1~30, 499, 499-1~2, 499-12, 499-14~22, 500, 500-1, 502~506, 506-1~2, 507, 508, 509-1~22, 510-1~4, 511, 512, 513-1, 514, 516, 516-1, 517, 517-1~2, 517-5~6 518-1~14, 518-16, 518-20, 519, 519-1~19, 520-4~8, 521, 521-1~6 522, 522-1~19, 523, 523-1~19, 524, 524-1~2, 525, 525-1~14, 526 527, 528, 528-1~18, 529, 529-1, 530, 531, 531-1~11, 532, 531-1~16 533, 533-1~18, 534, 534-1~20, 535, 535-1~7, 536, 536-1~2, 537, 537-1~3, 538, 538-1~8, 539, 539-1~6, 540, 540-1~15, 541, 541-1~18, 542, 542-1~20, 543, 543-1, 544, 545, 546, 546-4~17, 546-22, 547, 547-1~18, 548, 548-1~15, 549, 550, 550-1~6, 551~553, 553-1~9, 554~556, 556-1~13, 557, 557-1, 558, 558-1~19 559, 559-1~8, 560, 560-1~5, 561, 561-1~14, 562, 562-1~17, 563, 563-1~11, 564, 564-2, 565, 565-1, 566, 566-1~2, 567~570, 570-2, 573, 573-1~5, 573-13, 573-15, 574 574-1~5, 574-8~9, 575, 575-1,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577, 578, 578-1~3, 579, 580, 580-1~3, 581, 581-1~5, 582, 583 583-1~2, 584, 585, 585-1, 586, 586-1, 587~589, 589-1~5, 590, 590-1~4, 591, 591-1~14, 592, 592-1~14, 593, 593-1~12, 594, 595, 595-3, 596, 596-1~15, 597, 597-1~15, 598, 598-1~15, 599, 599-1~6, 600, 600-1~7, 601, 601-1~6, 602, 602-1~5, 603, 603-1~15, 604, 604-1~15, 605, 605-1~16, 606, 606-1~16, 607, 607-1~15, 608, 608-1~15, 609, 609-1~5, 610, 610-1~8, 611, 611-1~2, 612, 612-1~11, 613~615 615-1~5, 616~618, 618-1~15, 619, 619-1, 620, 621, 621-1~15, 622~624, 624-1~17, 625, 625-1, 626, 626-1~19, 627, 627-1~15, 628, 628-1~15, 629, 629-1~5, 630, 630-1~12, 631, 632, 632-1~12 633, 633-1~5, 634, 634-1~15, 635, 635-1~15, 636, 636-1~19, 637, 637-1~19, 638, 638-1~14, 639, 639-1~15, 640, 640-1~6, 641, 641-1~13, 642, 642-1, 643, 644 644-1~7, 645~648, 648-1~9, 649~651, 651-1~5, 652~654, 654-1~9, 655, 655-1~10, 656, 656-1~22, 657, 657-1~5, 658, 658-1~13, 659, 659-1~9, 660, 660-1~10, 661, 661-1~19, 66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p>662-1~5, 663, 663-1~7, 664, 664-1~7, 665, 665-1~10, 666, 666-1~4, 667, 667-1~4, 668 668-1~7, 669, 669-1~8, 670 670-1, 671, 672, 672-1, 673-8~9, 673-10, 673-13~16, 산206, 산246, 산249, 산249-1, 산250, 산251-1, 산251-3~8, 산251-13~20, 산252-1 산252-3, 산252-3, 산252-5, 산252-10~34, 산253-1, 산255, 산256</p>
			연희동	<p>562-1, 563, 563-1~2, 564, 564-1~8 565, 565-1, 566, 566-1~3, 567, 567-1~2, 568, 568-1, 569, 569-1, 570, 570-1, 571, 572, 572-1, 573, 573-1~2, 574, 574-1~2, 575, 575-1, 576, 576-1, 577, 577-1, 579 580~582, 582-1. 583, 583-1~2, 584, 584-1~2, 585, 585-1, 586~588 588-1, 589, 590, 590-1~2, 591, 591-1, 592, 592-1~2, 593~595, 595-1~2, 596, 596-1, 597, 597-1~2 598~602, 602-1, 603~607, 607-1, 608~610, 610-1, 611~615, 615-1, 616~618, 618-1, 619~621, 621-1 622, 622-1~14, 623, 623-1~7, 624 624-1~2, 625, 625-1~2, 626~629 629-1, 630~631, 631-1, 632~635, 635-1, 636, 637, 637-1, 638, 638-1 639, 639-1, 640~645, 645-1, 646, 646-1, 647, 648, 648-1~3, 649, 649-1~2, 650, 650-1~2, 651, 651-1~3, 652, 652-1, 653, 654, 654-1~2, 655, 655-1~3, 656,</p>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p>656-1~2, 657, 657-1, 658, 658-1, 658-2, 659, 659-1~2, 660~662, 662-1, 663, 664, 664-1, 665, 666, 666-1, 667, 668, 668-1, 669, 670, 670-1, 671~674, 674-1, 675,~677 677-1~2, 678, 679, 679-1~5, 680 680, 680-1, 681</p> <p>원 창동 209-10~11, 211-8~9, 329-1, 398 398-1~59, 399, 399-1~47, 400, 400-1~40, 401, 401-1~30, 402, 402-1~20, 403, 403-1~35, 404, 404-1~37, 405, 405-1~25, 406, 406-1~40, 407, 407-1~3, 409, 409, 409-1~9, 410, 410-1~26, 411 411-1~4, 412, 412-1~6, 413, 413-1~4, 414, 414-1~2, 415 415-1~5, 416, 416-1~10, 417, 417-1~12, 418, 418-1, 419, 420, 420-1~15, 421, 421-1~14, 422, 422-1~14, 423, 423-1~14, 424, 424-1~2, 424-5~6, 424-8~10 425, 425-1~9, 426, 426-1~12, 427 427-1~2, 428, 428-1~14, 429, 429, 429-1~12, 430, 431-1~2, 432, 433, 433-1, 434</p>

##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백석동란, 마전동란, 당하동란, 불로동란 및 원당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백석동	- 백석동 일원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백석동 80, 80-11, 80-16, 80-52, 81-10, 산33-6~7, 산34-2, 산34-7~9, 산34-11~12
마전동	- 마전동 일원 -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p>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219-18</li> <li>-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당하동 925-21~22, 925-24, 1012-1, 1015-3, 1018-1</li> <li>- 불로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불로동 725-8~9, 751-1</li> <li>-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498, 498-1, 499-2, 541-1~2, 545-14, 545-18~24, 546-7 547, 547-1~11, 547-13~16, 548, 548-1, 549, 550-1~5, 553-1 555-1~2, 556, 556-1~2, 557, 558, 559-8~10, 559-12~14, 559-18, 559-23, 559-26~27, 559-34, 559-42, 582-10~11, 582-18 582-21~22, 582-24, 582-26, 582-30, 609, 609-1~9, 610, 615, 615-1, 616-2, 616-4~5, 617-3~4, 617-6~7, 710-1, 713-10, 715~717, 산170-18~19, 산171-1, 산171-3~4, 산171-7, 산172 산172-1~3, 산181-2~4, 산181-10~13, 산181-16, 산182, 산183-1~2, 산184-1~2, 산185-1~3</li> </ul>
당 하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하동 일원</li> <li>-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당하동 925-21~22, 925-24, 1012-1, 1015-3, 1018-1</li> <li>-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마전동 498, 498-1, 499-2, 541-1~2, 545-14, 545-18~24, 546-7 547, 547-1~11, 547-13~16, 548, 548-1, 549, 550-1~5, 553-1 555-1~2, 556, 556-1~2, 557, 558, 559-8~10, 559-12~14, 559-18, 559-23, 559-26~27, 559-34, 559-42, 582-10~11, 582-18 582-21~22, 582-24, 582-26, 582-30, 609, 609-1~9, 610, 615, 615-1, 616-2, 616-4~5, 617-3~4, 617-6~7, 710-1, 713-10, 715~717, 산170-18~19, 산171-1, 산171-3~4, 산171-7, 산172 산172-1~3, 산181-2~4, 산181-10~13, 산181-16, 산182,</li> </ul>

	<p>산183-1~2, 산184-1~2, 산185-1~3</p> <p>- 백석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백석동 80, 80-11, 80-16, 80-52, 81-10, 산33-6~7, 산34-2, 산34-7~9, 산34-11~12</p>
불로동	<p>- 불로동 일원</p> <p>-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불로동 725-8~9, 751-1</p>
왕길동	<p>- 왕길동 일원</p> <p>-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p> <p>-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왕길동 219-18</p>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5호

###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장에 제3절(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및 제4절(제46조의5부터 제46조의7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46조의2(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46조의4(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25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46조의5(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의6(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46조의7(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제3장(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

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6호

###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1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1호

###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①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기 10일 이전에 그 뜻을 별지 제57호 서식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는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6장의 제4절(제110조부터 제112조)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5절(제113조)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7절(제113조)로 하고, 제5절(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4까지)과 제6절(제112의5부터 제112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절 주민세 재산분

제112조의2(비과세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체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2조의3(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2조의4(대장 정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 ②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112조의5(비과세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2조의6(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2조의7(대장 정리) ① 구청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절 세표

제113조(세표제출) 구청장은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부과상황을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에 따라 부과시마다 정리하였다가 보고통제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합계분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부터 제8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 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자

(경유)

제목 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

귀하는 아래와 같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 16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사항	면허일자	면허명칭	면허종호	면허기관		적요		
체납내역	년도	기분(월)	체납액			납기	독촉일자	비고
			면허세	가산금	합계			

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7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 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소	건물면적	비과세 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297mm × 210mm(미색모조 80g/m<sup>2</sup>)





(별지 제80호서식)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초신고내용				수정신고내용					결 재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m<sup>2</sup>)

(별지 제81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소	종업원 수	비과세 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297mm × 210mm(미색모조 80g/m<sup>2</sup>)

(별지 제82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신고 일자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m<sup>2</sup>)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2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건설과 분장사무 중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교통민원과 분장사무 중 제55호 다음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건설기계 관련 업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인천광역시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보 건 지 소	출장소	동
<b>총 계</b>		<b>783</b>	<b>499</b>	<b>18</b>	<b>43</b>	<b>16</b>	<b>44</b>	<b>163</b>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97	446	12	40	16	39	144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0	0	0
지방서기관		2	1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48	21	2	5	1	1	18
지방행정사무관		28	12	2				14
지방의무사무관		4			3	1		
지방시설사무관		3	3					
지방행정·보건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농업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녹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농업·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약무사무관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6급 소계		152	112	3	7	3	9	18
지방행정주사		78	58	3			1	16

지방세무주사	4	4					
지방전산주사	1	1					
지방사회복지주사	4	4					
지방공업주사	3	3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2				1	
지방보건주사	2	2					
지방약무주사	1			1			
지방간호주사	2			2			
지방환경주사	4	4					
지방시설주사	13	11				2	
지방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4	3					1
지방행정·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농업주사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3	2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7	7					
지방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세무주사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3	1		
지방간호·의료기술·약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1				1		
<b>7급 소계</b>	<b>214</b>	<b>145</b>	<b>3</b>	<b>11</b>	<b>5</b>	<b>16</b>	<b>34</b>
지방행정주사보	81	43	3			2	33

지방세무주사보	27	22				5	
지방전산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5	15					
지방공업주사보	9	8				1	
지방농업주사보	1	1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10	5		3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4			3	1		
지방간호주사보	5			4	1		
지방환경주사보	6	6					
지방시설주사보	33	29				4	
지방통신주사보	3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5	5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수의·농업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보	2					2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2				2		
<b>8급 소계</b>	<b>214</b>	<b>135</b>	<b>2</b>	<b>15</b>	<b>6</b>	<b>11</b>	<b>45</b>
지방행정서기	89	53	2	1			33
지방세무서기	11	8				3	
지방전산서기	5	5					
지방사회복지서기	18	8					10
지방공업서기	5	5					
지방농업서기	1	1					
지방녹지서기	4	4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서기	15	10		3		2	
지방의료기술서기	3			2	1		
지방간호서기	7			4	3		

지방환경서기	11	11					
지방시설서기	31	26				5	
지방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보건·공업서기	1	1					
지방보건·간호서기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1	2		
지방환경·공업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3			
<b>9급 소계</b>	<b>63</b>	<b>29</b>	<b>1</b>	<b>1</b>	<b>1</b>	<b>2</b>	<b>29</b>
지방행정서기보	37	14	1				22
지방세무서기보	4	3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8			1			7
지방공업서기보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8	8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b>별정직 계</b>	<b>2</b>	<b>2</b>	<b>0</b>	<b>0</b>	<b>0</b>	<b>0</b>	<b>0</b>
<b>6급상당 소계</b>	<b>1</b>	<b>1</b>					
일반비서	1	1					
<b>7급상당 소계</b>	<b>1</b>	<b>1</b>					
일반비서	1	1					
<b>기능직 계</b>	<b>83</b>	<b>50</b>	<b>6</b>	<b>3</b>	<b>0</b>	<b>5</b>	<b>19</b>
<b>6급 소계</b>	<b>4</b>	<b>4</b>					
지방전기장	1	1					
지방기계장	1	1					
지방운전장	1	1					
지방조무장	1	1					

<b>7급 소계</b>	<b>25</b>	<b>14</b>	<b>4</b>	<b>0</b>	<b>0</b>	<b>1</b>	<b>6</b>
지방전화상담장	1	1					
지방기계장	2	2					
지방운전장	10	2	1			1	6
지방사무실무장	4	2	2				
지방조무장	8	7	1				
<b>8급 소계</b>	<b>14</b>	<b>10</b>	<b>1</b>	<b>0</b>	<b>0</b>	<b>2</b>	<b>1</b>
지방통신원	1	1					
지방전화상담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5	3				1	1
지방사무실무원	2	1	1				
지방조무원	3	3					
<b>9급 소계</b>	<b>22</b>	<b>14</b>	<b>1</b>	<b>1</b>	<b>0</b>	<b>1</b>	<b>5</b>
지방전기원	1	1					
지방운전원	12	5	1	1			5
지방조무원	9	8				1	
<b>10급 소계</b>	<b>18</b>	<b>8</b>		<b>2</b>	<b>0</b>	<b>1</b>	<b>7</b>
지방운전원	7			1			6
지방조무원	11	8		1		1	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11호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재정비촉진 해제지역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재정비촉진 해제지역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2.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10.04.02 ~ 04.16(15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구간(개소)	15	-	-	15	기초간격 : 20M

○ '길'급 도로 : 로에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도로명 조서 및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4. 의견 제출방법

**【별첨】** 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2)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19)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404-701)

5. 도로명 확정 : 의견수렴 후 30일 이내에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되며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도로명(안) 의견 수렴 목록

일련 번호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m)	폭(m)	위계	기초간격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예비도로명)	기점	종점						
1	희망1길	원적로57번길	가좌동 214	가좌동 209-4	300	8	길	20m	기존 원적로에 기초번호 적용	
2	희망2길	원적로47번길	가좌동 260-12	가좌동 209-7	420	10	길	20m	기존 원적로에 기초번호 적용	
3	희망3길	원적로37번길	가좌동 261-19	가좌동 262	300	8	길	20m	기존 원적로에 기초번호 적용	
4	희망4길	원적로27번길	가좌동 277-7	가좌동 217-10	420	10	길	20m	기존 원적로에 기초번호 적용	
5	희망5길	원적로17번길	가좌동 278-4	가좌동 269	300	10	길	20m	기존 원적로에 기초번호 적용	
6	한길로	원적로7번길	가좌동 278-5	가좌동 274-7	420	20	길	20m	기존 원적로에 기초번호 적용	
7	광명1길	신진말로14번길	가좌동 210	가좌동 263-35	700	10	길	20m	기존 신진말로에 기초번호 적용	
8	광명2길	신진말로28번길	가좌동 212-14	가좌동 278-9	800	10	길	20m	기존 신진말로에 기초번호 적용	
9	대추나무길	장고개로231번길	가좌동 557-3	가좌동 280	135	10	길	20m	기존 장고개로에 기초번호 적용	
10	안산2길	가정로88번길	가좌동 155-1	가좌동 155-19	170	10	길	20m	기존 가정로에 기초번호 적용	
11	안산1길	가정로78번길	가좌동 160	가좌동 157-25	330	10	길	20m	기존 가정로에 기초번호 적용	
12	도로명미부여	가정로68번길	가좌동 159	가좌동 1-11	170	10	길	20m	기존 가정로에 기초번호 적용	
13	방죽3로	가정로58번길	가좌동 561-12	가좌동 560-1	330	10	길	20m	기존 가정로에 기초번호 적용	
14	도로명미부여	가정로48번길	가좌동 562-2	가좌동 562-1	170	10	길	20m	기존 가정로에 기초번호 적용	
15	감중절1길	건지로284번길	가좌동 155-17	가좌동 560-15	600	10	길	20m	기존 건지로에 기초번호 적용	

# 도로명 / 도로구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20호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04.07~04.21(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검암신명2차, 검암신명4차, 검암풍림2차, 검암풍림3차, 경서가이아, 경서태평, 당하금강, 당하대우, 당하풍림1차, 당하풍림2차, 당하풍림3차, 마전대원1차, 마전대원2차, 마전대주, 마전풍림3차, 불로대림, 왕길검단풍림, 왕길신명, 원당금호, 원당대림, 원당동문, 원당신안, 원당엘지, 원당풍림아파트 게시판
4. 공고대상 : 2009.12.01~2010.01.31.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단독신청 “붙임참조”(22명)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계약서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통장·도장,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032-560-4757,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2009년 12월, 2010년 1월 최초분양자(매도자)명단

연번	건물명칭	동	호	납부자	환급신청일
1	당하대우	106	1403	장은섭	2009-12-04
2	당하금강	116	201	이지영	2009-12-18
3	당하풍림2차	203	1203	김연상	2009-12-30
4	당하풍림3차	301	503	유애점	2009-12-10
5	당하풍림1차	104	703	최정숙	2009-12-14
6	검암풍림3차	306	902	유영형	2009-12-26
7	원당동문	104	704	이정태	2010-01-29
8	원당동문	104	1402	서송림	2010-01-29
9	원당대림	106	502	황정민	2010-01-29
10	원당풍림	110	903	최미선	2010-01-21
11	원당풍림	111	1204	이정자	2010-01-29
12	원당풍림	213	901	권희영	2010-01-29
13	당하대우	110	604	김명회	2010-01-29
14	원당엘지	101	1503	김수현	2010-01-29
15	마전대원2차	203	1004	정일봉	2010-01-29
16	마전대주	105	403	윤주홍	2010-01-29
17	왕길검단풍림	104	501	박현경	2010-01-29
18	왕길검단풍림	104	1002	장영기	2010-01-29
19	왕길신명	101	102	박정애	2010-01-29
20	경서가이아	208	1002	공재복	2010-01-29
21	당하풍림1차	102	2002	최우심	2010-01-29
22	불로대림	102	1503	임경선	2010-01-20

[별지 제8호 서식]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 NO. )

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조정신청  
사 유

※ 신청인이 환급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할 것)

조정신청 대상자  
및 증빙서류

-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중
- ② **부담금 계약사실** 또는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영수증 원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이 가능한 자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접수증

( NO. )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33호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천지마트	인천 서구 가정동 533-9	김대호	일반	2010.04.07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4. 07- 2010. 04. 14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4.07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36호

## 방법CCTV모니터요원채용공고

1. 채용예정인원 : 3명

2. 모니터 요원 근무시간 및 조건

가. 근무 기간 : 2010. 5. 1 ~ 2011. 3. 31

☞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 장소 : 방법CCTV 관제센터 (서구청 본관 지하)

다. 근무 방법 및 시간

- 근무방법 : 2인1조, 4교대(주·야·비·휴), 일요일 근무

- 근무시간 :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익일 09:00)

라. 근무 조건

- 기본 급 : 35,000원/일 (8시간근무시)

- 주휴수당 : 35,000원/주, 5일(40시간)이상 근무시

- 시간외(02:00 ~ 09:00)수당 : 시간급의 150% 지급

- 야간근로(22:00 ~ 익일06:00)수당 : 시간급의 50% 지급

- 월차수당 : 35,000원/월 (만근시)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모니터 요원 임무

가. 방법용 CCTV 모니터 감시업무

나.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자료 모니터링 보고 및 범죄사항 등의 특이 사항 발생시 근무경찰관에게 신속히 보고

다. 방법용 CCTV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라. 기타 근무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

4. 응시자격

가.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자로서1961.1.1일 부터 1991.12.31일 이전 출생한 여자

나. 컴퓨터 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각1.2.3급) 소지자

##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주민등록 초본 1부.

다.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사본 1부

라. CCTV모니터 요원 근무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

바. 국가 유공자 등 증명서 1부. (서류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선발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아래 평정요소에 대한 점수부여(30점 만점)

- 자기소개서 내용(모니터요원 근무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견 등)에 따른 배점

구 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배 점	10~9	8~7	6~5	4

- 컴퓨터 자격증 종류에 따른 배점

자격증종류	컴퓨터활용1급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2급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3급	워드프로세서3급
배 점	10	8	6	5

※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함

- CCTV 모니터요원 근무경력 유·무에 따른 배점

근무 경력	유	무
배 점	10	6

※ 근무경력은 총 합계 3개월 이상만 경력으로 인정

## ○ 전형요령

- 제1차 시험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예정
- 동점자가 발생시에는 3배수에 관계없이 모두 선정

## 나. 제2차 시험 (면접전형)

## ○ 전형요령

- 면접전형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2순위 : 연령이 많은 자

☞ 관련법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함

☞ 최종 합격자중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최소화하고 채용하지 않음

☞ 예비순위자를 선정하여 부적격자 및 본인 포기 등으로 합격취소 또는 모니터요원 근무자 중 결원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로 채용결정함

## 7. 채용일정 및 장소

## 가. 접수 기간

○ 2010. 04. 15 ~ 4. 16 (09:00 ~ 18:00)

☞ 장소 : 서구청 총무과 (총무팀) [직접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나. 2010. 04. 19 (월) : 제1차 서류전형 심사 및 합격자 발표

다. 2010. 04. 21 (수) 14:00 : 제2차 면접전형

라. 2010. 04. 22 (목) : 제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제1·2차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통지함

## 8.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 나.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전형 실시 30분전에 면접전형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채용관련 규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총무팀)로 문의(☎032-560-409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공개채용합니다.

2010년 4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